-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- 23년, 24년 지정기업 사업화마케팅 사업 공고

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국내·외 신규판로 개척을 위한 「사업화마케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23년, 24년 지정 도약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2월 10일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사	업	명	:	2025년	전북특별자치도	도약기업	육성사업	사업	화미	ㅏ케	E	إج

□ 사업기간 : 2025. 4. 1. ~ 2025. 9. 30.

□ 신청자격 : 23년, 24년 지정 도약기업

□ 지원규모 : 7건 내외 (기업당 연 1회 지원, 현장애로기술해결 사업과 중복 수행 가능)

□ 지원내용

지원	항목	주요 내용	지원금	비고	
사업화	국내 마케팅	○ 국내 자식재산권 및 인증 획득 지원 기술교류 지원 등 ○ 온라인 광고비 지원, 전시회 참가 지원(임 차료, 운송비 등), 제품판매를 위한 홍보영 상 제작 지원, 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지 원, 홍보물 제작 지원(제품 카탈로그 등), PPL광고 지원 등	최대	<u>도비</u> <u>지원금</u> 의 10%	
마케팅 지원	국외 마케팅	○국외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지원 등 ○기술교류 지원(국내↔해외), 계약서 자문 및 현지 법률 자문 비용, 수출계약을 위한 해 외바이어 국내 초청 및 국외 출장 지원(항 공료, 통역비 등), 전시회 참가 지원(임차료, 항공비 등),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, 해외 B2C·B2B 오픈마켓 입점 및 광고지원 등	쇠내 25백만원	<u>이상</u> 기업 자부담금 납입 必	

※ 지원금은 공급가액(VAT 제외)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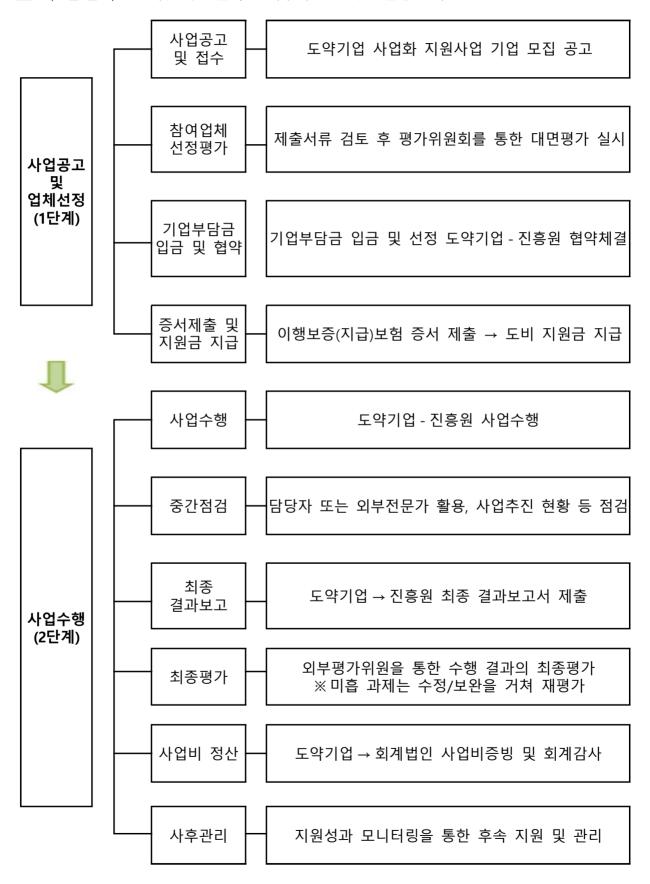
2 세부 지원내용

□ 세부지원항목 (최대 25백만원 지원, VAT제외)

지원항목	세 부 내 용	기업당 지원금
	□ 국내·외 지식재산권 지원(특허 및 기술이전) - 국내·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지원 - 특허선행기술조사비 지원 : 최대 1백만원/회 - 국내·외 타기업/연구기관과 기술이전(권리이전, 전용 실시권) ※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(www.ipmarket.or.kr), 기술보증기금 스마트테크브릿지(tb.kibo.or.kr)를 활용한 중개로 가격산정 및 거래협상이 진행된 경우 기술이전비 집행 가능 - 특허기술분석비 지원 : 최대 10백만원/회	최대 15백만원
공통	□ 국내·외 인증 획득 지원 - (신규) 해외규격인증, ISO, KC인증, 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 등 - (연장) 기취득 국내 지식재산권 및 인증에 대한 연장 비용 지원 등 ※컨설팅비 지원불가(단, 인증 취득 과정에 포함된 컨설팅은 인정)	-
	□ 기업소개 및 제품판매를 위한 국내·외 홍보영상 제작 지원 - 일반 홍보영상 지원 : 최대 6백만원/3회 - 3D 입체 영상 제작비 지원 : 최대 10백만원/회	최대 2회
	국내·외 홍보물 제작 지원전단지, 리플렛, 카달로그, 전시회 홍보 판촉물 등 제작비	최대 10백만원
	□ 국내·외 홈페이지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- 홈페이지 제작 및 상세페이지 제작, 리뉴얼 비용	최대 10백만원
	□ 온라인 홍보비 지원 - 유튜브, 페이스북, 카카오톡 등 SNS에 타깃 광고 - 네이버 등 웹사이트 배너 및 키워드 광고 실시	최대 15백만원
국내	□ 전시회 참가 지원 ※ '25년 1분기건 소급적용 - (오프라인) 부스임차료, 장치임차료, 운송비, 기타 장치 - (온라인) 전시회 참가비, 온라인 배너 제작비	최대 3회
마케팅	□ 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- 홈쇼핑 입점비 지원 : 최대 15백만원/회 - 라이브 커머스 지원 : 최대 10백만원/회	최대 5회
	□ 지면/협찬 광고 지원 등 - 일간지, 산업잡지 지면 광고 지원 : 최대 100만원/회 - PPL/협찬 광고 지원(TV, 유튜브, 라디오 등) : 최대 10백만원/회	최대 6회
	 국외 수출 법률 자문 지원 수출 계약서 자문, 지재권 법률 분쟁(침해·피침해) 대응을 위한 법률 의견서 작성 비용 등 	최대 5백만원
국외	□ 수출계약을 위한 바이어 국내 초청 및 국외 출장 - 항공료(2인) 및 통역비	최대 3회
마케팅	□ 국외 전시회 참가지원 ※ '25년 1분기건 소급적용, 숙박비 지원불가 - (오프라인) 부스임차료, 장치임차료, 운송비, 항공료(2인), 통역비 - (온라인) 전시회 참가비, 온라인 배너 제작비	최대 3회
	 온라인 홍보비 지원 오픈마켓 입점(교육 및 계정비용, 컨설팅, 마케팅 비용 등), 라이브커머스, SNS/배너/협찬광고 등 온라인 홍보비 	최대 15백만원

3 수행절차

□ 추진절차 ※ 사업 추진절차는 세부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4 모집공고 및 접수

□ 공고기간 : 2025. 2. 10.(월) ~ 2025. 3. 7.(금)

□ 접수기간 : 2025. 2. 17.(월) ~ 2025. 3. 7.(금) 17:00 까지

□ 접수방법 : 전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홈페이지(www.jblc.or.kr)를

통한 온라인 접수, <접수 확인전화 필수>

O 서류 제출 시 신청서 한글파일 원본과 직인날인 스캐본 모두 제출

신청서류 다운로드: www.jblc.or.kr

도약기업 \rightarrow 지원사업신청 \rightarrow 사업화 지원 \rightarrow 2025년 23, 24년 지정 도약기업 사업화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

□ 문의전화 : 063-711-2164, 2072 (이다영 선임담당관, 배정은 담당관)

□ 제출서류 ※ 사업계획서의 마지막 장, 「필수 제출서류」확인 후 제출

연 번	구 비 서 류	비고
1	사업화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	서식 1호
2	선정평가 발표자료 PPT (발표시간 7분 내외)	자유양식
3	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	서식 2호
4	중복지원금지 확약서	서식 3호
5	청렴서약서	서식 4호
6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필수
7	외주용역 위탁기업(관)의 사업자등록증 등	필수
8	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(산출내역, 견적서 등)	필수
9	2024년 수출실적 및 활동 증빙자료 (수출실적 증명원, 국내외 전시회 참가 증빙 등)	선택

- O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는 신청기업의 과제참여 인력 모두 동의 필수
- O 서류 접수 시,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**직인 날인**
- O 완납 증명서 및 활동 증빙자료는 3개월 이내 발행 필수
- O 모든 견적서는 공고일 내 발급분에 한함(기한 초과 시, 재요청)
- 신청과제별 자료가 중복되더라도 구분하여 제출

5 평가 및 선정

- □ 평가일정 : 2025. 3월 중(예정)
 - ※ 세부적인 평가 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□ 평가장소 :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*상세장소 개별 안내
- □ 평가방식 : 총괄책임자 및 과제 담당자 대면평가 (발표 7분, 질의 8분)
 - 사업계획서 중심 마케팅 전략 PPT 발표
- □ 평가기준 : 고득점순 선정(60점이하는 탈락)
 - ※ 지원금 잔여 예산 발생 또는 사업중도 포기 시, 차순위 기업 지원
- □ 평가항목

심사단계	세 부 내 용
사업의 필요성	○ 지원의 필요성 : 사업계획 당위성, 사업추진 시급성 등
무료이 명하서	○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: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
목표의 명확성	○ 목표의 실현가능성 : 사업기간 내 추진목표 달성 가능성 등
추진방법의	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: 정보조사 충실성, 사업계획 적정성 및 혁신성 등
적정성	○ 사업비 집행계획의 합리성 : 사업비 배정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등
	○ 매출 및 이익 가능성 :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규모, 성장성 등
파급효과 	○ 추진사업의 파급효과 : 매출증대, 고용창출, 수출, 지재권 확보, 기술적·사회적 기여도 등

※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규모(기업수, 지원금 등)가 변동가능

6 선정제외 대상

- 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업, 대표자, 과제 책임자 등)가
 - O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O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 - O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.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부도, 휴/폐업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
- □ 공고일 현재 주관기업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
 - 4대보험 미가입 시,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
- □ 신청기업에 旣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
- □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

7 유의사항

- □ 신청서류는 성장사다리 홈페이지 등록 마감일 17: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, 신청서 등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□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.
- □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금 지원액의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.
- □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1항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 등 반대급 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, 지급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 처리되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*이 부가됨.

* 제재부가금

- 허위 청구(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:[받은 지원금]의 5배
- 과다청구(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여 받은 경우): ([받은 지원금]-[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])의 3배
- 목적 외 사용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:[정해진 목적·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]의 2배
- □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, 지정철 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.
- □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 장사다리 육성사업 운영지침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.
- □ 사업참여업체는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. 끝.